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. 18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확정통보된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해 기능직과 일반직 공무원간의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담당공무원 9명을 정원 순증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당초 1,231명에서 9명 증가한 1,240명으로 하고 이에 따른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또한 1,260명에서 1,269명으로 개정함. (안 제2조)
- 나. 기능직공무원 30명을 축소하는 대신 일반직공무원 30명을 증원함으로써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함. (안 별표 1, 2, 3)
- 다.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 순증 및 기능직과 일반직공무원간의 정원 조정에 따라 정원채정기준의 비율과 정원표의 정원을 조정함.  
(안 별표 1, 2, 3)

## 3. 개정근거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
- 나.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
- 다.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·인사사무 처리지침(행정안전부)

**4. 개정조례안** : 따로 붙임

**5. 예산조치** :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

가. 법규명 및 관련조문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나. 정원의 변동내역 : 정원 순증 9명 (사회복지직 9급)

다. 소요비용 추계 : 260,168천원 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근거
합 계	260,168	
인 건 비	223,657	기본급,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 등
이전경비	36,511	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금 등

※ 2012년도 사업예산서를 준거하여 9급 1호봉을 기준함.

**6. 기타사항**

가. 입법예고 : 2012. 1. 10. ~ 2012. 1. 16. (제출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2. 1. 17.)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구에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”로 하고, “1,260명”을 “1,26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231명”을 “1,24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,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**

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·정무직
비율	(79)% 이상	(19)% 이내	(2)% 이내

비고

3. <삭제>

[별표 2]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**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2)% 이내	(31)% 이내	(31)% 이내	(8)% 이상

2. 기능직공무원

구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율	(4)% 이내	(19)% 이내	(36)% 이내	(31)% 이내	(10)% 이상

[별표 3]

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**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1,269	1,269			
정무직	1	1			
일반직 계	1,016	1,016			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57	32		9	16
6급 이하 계	951	951			
별정직 계	15	15			
5급 상당	2		2		
6급 상당 이하 계	13	13			
기능직 계	237	237			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260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31명</u></li> <li>2. (생략)</li> </ol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----- <u>1,269명</u>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: <u>1,240명</u>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3조(정원채정기준) (생략)</p>	<p>제3조(정원채정기준) (현행과 같음)</p>

**현 행**

**개 정 안**

[별표1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

구 분	일반직	기능직·고용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(76)% 이상	(22)% 이내	(2)% 이내

비고

- (생략)
- (생략)
- 2015년까지 일반직의 비율은 78%이상으로 기능·고용직의 비율은 20%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한다.

[별표2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2)% 이내	(31)% 이내	(30.5)% 이내	(8.5)% 이상

2. 기능직 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 율	(3)% 이내	(17)% 이내	(35)% 이내	(33)% 이내	(12)% 이상

[별표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260	1,260			
정무직	1	1			
일반직 계	977	977			
3급	(생략)				
4급	(생략)				
5급	(생략)				
6급 이하 계	912	912			
별정직 계	(생략)				
5급 상당	(생략)				
6급 상당 이하 계	(생략)				
기능직 계	267	267			

[별표1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

구 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(79)% 이상	(19)% 이내	(2)% 이내

비고

- (현행과 같음)
- (현행과 같음)
- <삭 제>

[별표2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2)% 이내	(31)% 이내	(31)% 이내	(8)% 이상

2. 기능직 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 율	(4)% 이내	(19)% 이내	(36)% 이내	(31)% 이내	(10)% 이상

[별표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269	1,269			
정무직		1			
일반직 계	1,016	1,016			
3급	(현행과 같음)				
4급	(현행과 같음)				
5급	(현행과 같음)				
6급 이하 계	951	951			
별정직 계	(현행과 같음)				
5급 상당	(현행과 같음)				
6급 상당 이하 계	(현행과 같음)				
기능직 계	237	237			